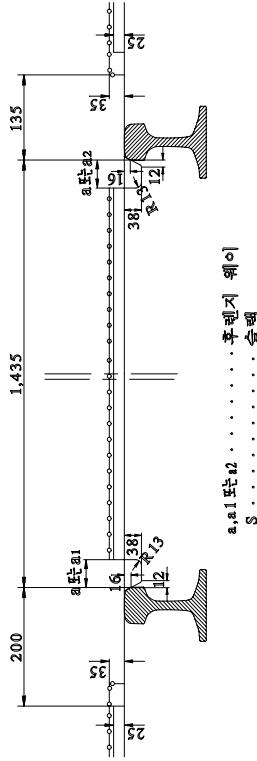


건축한계 테일부 상세



보 7]

일반의 경우에 대한 건축한계, 다만,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물이 설치되는 구간에는 7,010㎜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

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차·부에 대한 한계.
이 한계는 교량, 터널, 구름다리 및 그 앞뒤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——————
기선클 교량, 터널, 눈덮개, 구름다리 및 그 앞뒤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계수를
내가지 창정적으로 ——————로 표시된 한도까지 철도차량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
축소할 수 있다.

축선에서 금수, 금관, 천장, 천장, 세차 등의 설치, 선호주, 전자설비 설치주, 차고의
문 및 내부장치 또는 문선(중상, 데비, 혼동, 황지, 고한, 각선파, 험벽체 등)에
있어서 기선클 교량, 터널, 구름다리 및 그 앞뒤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차
선로 지지물에 대한 건축한계를 축소할 수 있는 한계.

선로전환기 표지 등에 대해서 건축한계를 줄일 수 있는 한계.
승강장 및 저하장에 대하여 건축한계를 줄일 수 있는 한계.
터널기 부분에 대하여 건축한계를 줄일 수 있는 한계. (단, a1=a2=70)

치수단위 : 밀리미터

